

재활용환경성평가 (자원순환기본법)



Keco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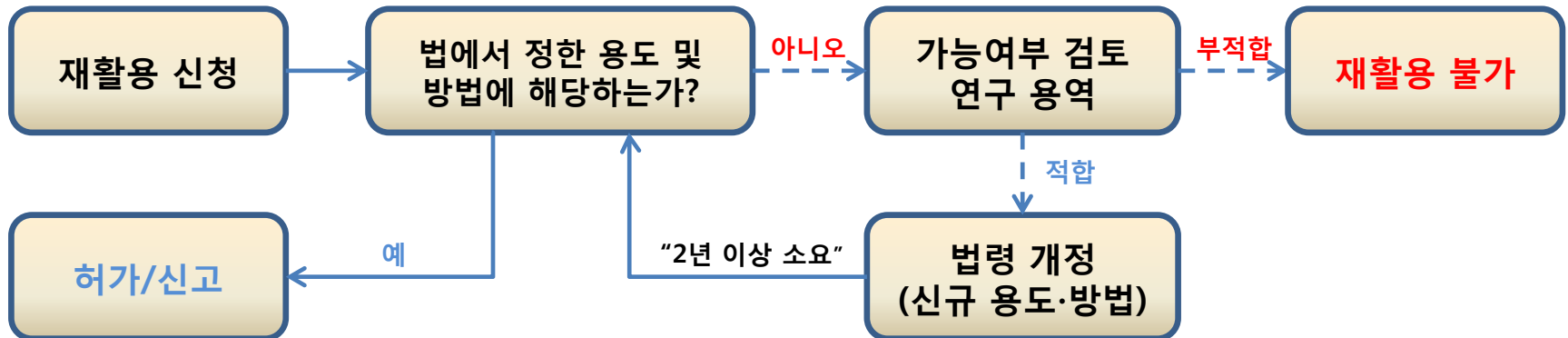
- 1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
- 2 자원순환기본법

재활용환경성평가

제도 소개

추진배경

- 기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신규재활용 허용 방식
- 기존 재활용업 허용 방식 : Positive(허용유형 나열) 방식



<기존 폐기물관리법[별표5의2]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

9. 폐유리를 파쇄·분쇄 하여 유리제품이나 건축·토목자재의 원료[일정한 규격의 용기 또는 상자(벌크백을 포함한다)에 넣거나 포장하여야 한다]로 가공하는 경우
20. 이산화규소나 산화알루미늄을 주성분으로 하는 폐촉매를 파쇄하여 시멘트 보강재나 콘크리트 혼화재로 사용하는 경우

기존 재활용업 허가방식의 문제점

한계점

재활용 허가 범위 제한

법령에 규정된 재활용
용도·방법(71개)만 허용

허가지연·불허 발생

담당자 변경 시 법령 해석
등의 차이로 허가 지연

신기술 시장진입 장벽

신기술 개발 및 적용에
장시간 소요(약 24개월)

'Positive 방식의 규제'로 인해 재활용 활성화 한계

환경과 건강을 지키면서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관리제도 선진화 추진 필요

<기존 재활용업 허용 방식에 따른 재활용 불가 사례>

- ▶ 카페에서 발생하는 커피찌꺼기로 탈취제와 흡습제를 제조하는 특허를 내고 사업을 시작하여 하였으나, 재활용 용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합법적인 사업 추진이 곤란
- ▶ 하수처리오니를 톱밥과 혼합하여 고품연료제품을 제조하고자 하였으나, 법령 상 사용 폐기물에 하수처리오니가 포함되지 않아 재활용 불가

재활용환경성평가

폐기물관리법('16.7.21) 개정 내용 요약

<폐기물의 세부분류>

- 제2조의2(폐기물의 세부분류)
 -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는 폐기물의 발생원, 구성성분 및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위반금지 조건>

-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①
 1. 비산 먼지, 악취,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오염물질 ⇒ 생활환경에 위해 x
 2. 침출수, 중금속 유출 ⇒ 토양, 수생태계, 지하수오염 x
 3. 소음, 진동 ⇒ 사람 피해 x
 4. 유해물질(중금속 등) 제거·안정화하여 재활용제품, 원료로 사용할 때 ⇒ **대통령령** 준수(환경에 위해 x 등)
 5. 그 외 **환경부령** 준수

<위반금지 준수방법>

-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③
 - 오염 예방·저감방법, 폐기물 취급기준·방법 등은 **환경부령**

<재활용 전면 제한 물질>

-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②
 1. 폐석면
 2. PCBs 함유(**환경부령** 농도이상) 폐기물
 3. 의료폐기물(태반 제외)
 4. **대통령령** 폐기물(폐유독물 등)

<재활용 환경성 평가>

- 제13조의3(폐기물의 재활용 시 환경성평가)①
 1. **환경부령** 규모이상 or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을 토양·지하수·지표수 등에 접촉시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방법으로 재활용
 2.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제13조의2③)을 정하지 않은 폐기물 재활용

<재활용 환경성 평가 예외>

- 제13조의3(폐기물의 재활용 시 환경성평가)②
 1. 「비료관리법」에 따라 공정규격이 설정된 비료의 제조
 2.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폐기물 재활용

<환경성 피평가자의 재활용 승인 신청>

- 제13조의3(폐기물의 재활용 시 환경성평가) ③
 -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은 자는 그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재활용 가능여부 승인을 받음

<재활용환경성 평가기관>

- 제13조의4(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등)①
 1. 국공립 연구기관
 2. 환경공단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인력·시설·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에 신청

- 제13조의4(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등)
 - ③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평가서 작성
 1. 대상지역 현황
 2. 토양 등에 미치는 환경성 예측·평가
 3. 환경위해성 예방·제거 방안
 4. 환경변화 모니터링 계획
 5. 재활용 원칙·준수사항이 없는 폐기물의 환경성평가를 위한 **환경부령** 사항
 - ⑦ 평가기관 지정기준·절차·정기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함

<환경부(과학원)>

- 제13조의3(폐기물의 재활용 시 환경성평가)
 - ④ **대통령령**의 승인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 후 승인
 - ⑤ 승인 유효기간, 폐기물 양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건 붙일 수 있음

폐기물 재활용 인정체계 개편(법 제13조의2)

- 재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재활용은 허용하되, 환경·인체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관리 기준 설정
- 법령상 규정된 특정 재활용 제품 또는 용도방법(71개)만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 유형(활동) 내에서 법용 제품군 등으로 재활용 가능
 - ①폐기물 세분화, ②재활용 유형, ③관리기준을 조합하여 재활용 허용체계 마련

기존

현행

재활용허용

법령상 규정된
재활용 용도·방법(71개)

관리기준

재활용 용도·방법별
관리기준 설정

법률 개정여부

새로운 재활용 방법이 허용
되기 위해서는 법률개정 필요

유형내 재활용 가능

※ 특정 용도 방법이 아닌 활동별
재활용 가능여부가 결정

재활용 유형별 최소
관리기준 설정

법률개정 절차 없이
재활용 가능

재활용 금지·제한 대상 폐기물(법 제13조의2②)

○ 재활용 금지 제한 대상 폐기물

- 1) 폐석면
- 2) PCBs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도 이상으로 함유하는 폐기물
- 3) 의료폐기물(태반 제외)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 시행령 [별표 4의3] 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폐기물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중 폐기되는 물질
 -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제조 등이 금지된 물질
 - 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금지물질로 지정·고시된 물질
 - 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로 지정·고시된 물질
2. 폐농약(「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폐기되는 것을 말한다)
3. 폐의약품(「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중 폐기되는 것을 말한다)
4. 의료폐기물을 멸균·분쇄한 잔재물
5. 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으로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아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재활용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재활용대상폐기물 유해특성 관리

- 재활용 과정에서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않도록 폐기물 유해특성 관리항목 확대(3→9종)
 - (기존) 지정/일반 폐기물(용출독성, 부식성), 의료폐기물(감염성)
 - (현행) 용출독성, 부식성, 감염성, 폭발성, 인화성, 자연발화성, 금수성, 산화성, 생태독성
 - ※ 환경부고시 제2016-146호(2016.7.21.) 「폐기물 유해특성의 성질 및 해당 기준」
- 유해특성을 확인해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업종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6-182호)에 따라 유해특성을 제거 또는 안정화 한 후 재활용
- 유해특성을 활용한 재활용(폐산 →수처리제 등) 관련 유해특성에 대한 제거 또는 안정화 없이 재활용 가능

‘16.7이전

- 부식성
- 용출독성
- 감염성

‘16.7~’17.12

- 부식성
- 용출독성
- 감염성
- 폭발성
- 인화성

‘18.10이후

- 부식성
- 용출독성
- 감염성
- 폭발성
- 인화성
- 금수성
- 산화성
- 자연발화성
- 생태독성

폐기물 관리코드 개선

○ 폐기물 종류 확대(152→286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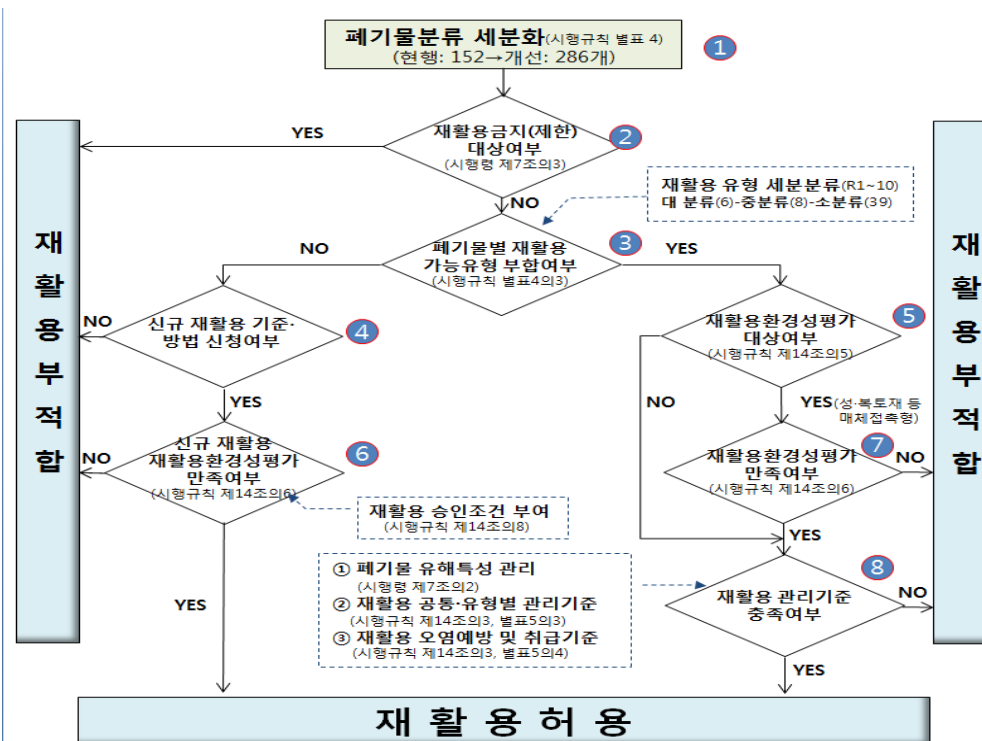
- 폐기물 발생 업종 및 특성을 고려한 폐기물 세분화
- 폐기물 중분류 코드를 4자리로 설정
- 생활폐기물 분류 번호 신설(91-**-**)

<기 존>		<현 행>	
관리코드	폐기물 명	관리코드	폐기물 명
51-01-00	유기성오니류	51-01	유기성오니류
51-01-01	폐수처리오니	51-01-01	정수처리오니
51-01-02	공정오니	51-01-02	하수처리오니
51-01-03	정수처리오니	51-01-03	분뇨처리오니
51-01-04	하수처리오니	51-01-04	가축분뇨처리오니
51-01-05	분뇨·가축분뇨처리오니	51-01-05	펄프·제지공정오니 (신규)
		51-01-06	그 밖의 공정오니
		51-01-07	펄프·제지폐수처리오니 (신규)
		51-01-08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
		51-01-99	그 밖에 유기성오니 (신규)

재활용환경성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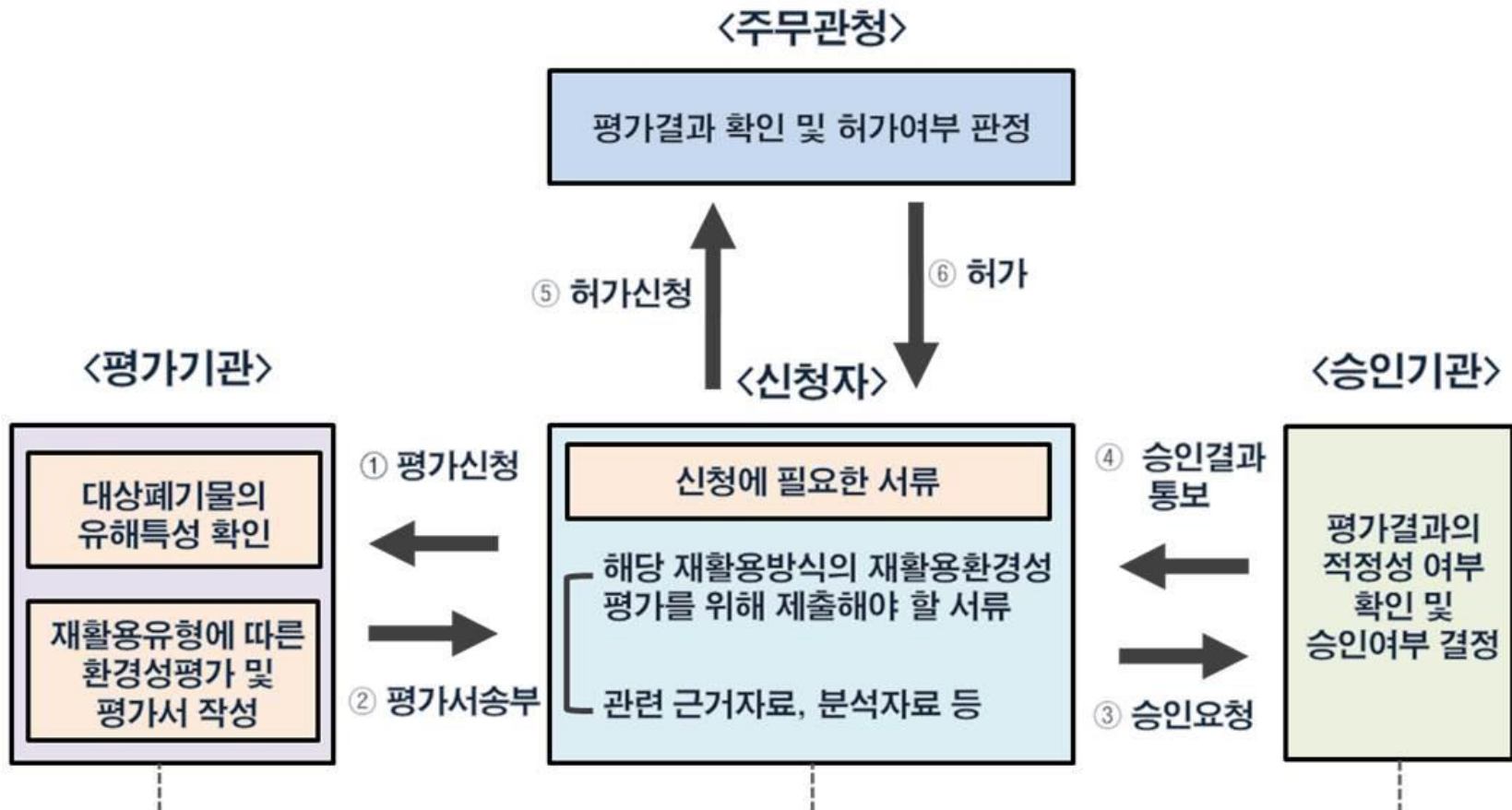
재활용환경성평가 도입

- 용도·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어 법령·고시 개정 이전에는 재활용이 불가능했던 재활용방법에 대해 환경성평가를 통해 재활용 허용여부 결정
- 일정 규모 이상의 매체(토양·지하수 등) 접촉형 재활용은 환경성평가를 통해 인체·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평가한 후에 재활용 허가 여부 결정
- 신기술 도입이 용이하여 재활용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 재활용 시장 활성화



재활용환경성평가

재활용환경성평가 제도 흐름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4(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전문적·기술적인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을 지정하고, 그 기관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1) 폐기물 분석 전문기관(일반분야)
- 2) 토양관련 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기관, 위해성평가기관, 오염조사기관)
- 3) 환경부장관 고시기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6]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기준

○ 평가기관 지정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인력 요건을 갖춘 후에 지정 신청 가능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3(폐기물의 재활용 시 환경성평가) ①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의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을 토양·지하수·지표수 등에 접촉시켜 복토재·성토재·도로기층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방법 으로 재활용하려는 자 (둘 이상이 공동으로 재활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의 원칙 및 준수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 1)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 : 12만톤
- 2) 재활용 대상부지 면적 : 3만m²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방법

- 1) 농업이나 토질개선을 위하여 재활용하는 유형(R-5, R-6, R-7)
- 2) 토양이나 공유수면 등에 성토재 · 복토재 · 도로기층재 · 채움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유형(R-7)

☞ 폐기물의 재활용의 원칙 및 준수사항(법 제13조의2)

1. 비산 먼지, 악취,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오염물질 ⇒ 생활환경에 위해 x
2. 침출수, 중금속 유출 ⇒ 토양, 수생태계, 지하수오염 x
3. 소음, 진동 ⇒ 사람 피해 x
4. 유해물질(중금속 등) 제거·안정화하여 재활용제품, 원료로 사용할 때 ⇒ **대통령령** 준수(환경에 위해 x 등)
5. 그 외 **환경부령** 준수

매체접촉형 재활용환경성평가

○ 매체접촉형 평가대상

환경부령에서 정하는 재활용 유형에 포함	환경부령에서 정하는 재활용 유형에 포함되지 않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p>평가대상 (가)</p> <p>재활용환경성평가 단계의 모든 평가 적용</p>	<p>평가대상 (나)</p> <p>재활용환경성평가 단계의 모든 평가 적용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인 경우 규모와 관계없이 (나)에 해당)</p>	 <p>이상</p>
<p>①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한 물질의 양 ☞ 12만톤 또는 면적 3만제곱미터</p>	<p>②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한 물질의 양 ☞ 2만톤 또는 면적 5천제곱미터</p>	
<p>해당사항 없음</p>	<p>평가대상 (다)</p> <p>재활용환경성평가 단계의 일부 평가만 적용 (폐기물 유해특성평가부터 유출시험까지 해당)</p>	 <p>미만</p>

☞ 매체접촉형 재활용

폐기물 등을 토양·지하수·지표수 등에 접촉시키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재활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4①4.)

매체접촉형 재활용환경성평가

○ 매체접촉형 평가 유효기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8(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요건)

1.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요건
가. 승인의 유효기간(최대 5년 까지로 한다)

○ 매체접촉형 평가 예외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3(폐기물의 재활용 시 환경성평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공정규격이 설정된 비료를 제조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 시행규칙 제14조의5③)

- 1) R-5(농업 생산에 기여하는 재활용), R-6-1 (부숙토·지렁이분변토로 매립시설 복토재나 토양개량재로 재활용)
- 2) R-7-3(매립시설 복토재, 바다인접 매립시설의 복토재·차수재)
※ 일부 시설이 미비한 폐기물매립시설은 평가 대상
- 3) KS·환경표지·GR 인증된 골재를 R-7-1(인허가 토목공사) R-7-2(공유수면 매립면허 지역), R-7-3(매립 시설 복토재·차수재)로 사용

재활용의 원칙 및 준수사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분석·확인 필요 여부
51-01	유기성오니류		
51-01-01	정수처리오니	R-3-1, R-3-2, R-3-4, R-9-3, R-9-4, R-10	해당 없음
		R-4-2, R-5-1, R-5-4, R-7-3, R-8-2, R-10	해당
51-01-02	하수처리오니	R-3-1, R-3-2, R-3-4, R-4-9, R-9-3, R-9-4, R-10	해당 없음
		R-4-2, R-5-1, R-5-4, R-6-1, R-6-2, R-7-3, R-8-2, R-9-5, R-10	해당

※ 사전 분석·확인 : 폐기물 원료의 중금속 등 유해물질 수준의 적정여부, 폐기물 배출원 조건, 타법령이 제한하고 있는 원료의 조건 등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3]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2) R-4 유형의 재활용 기준

가) R-4-2 유형의 재활용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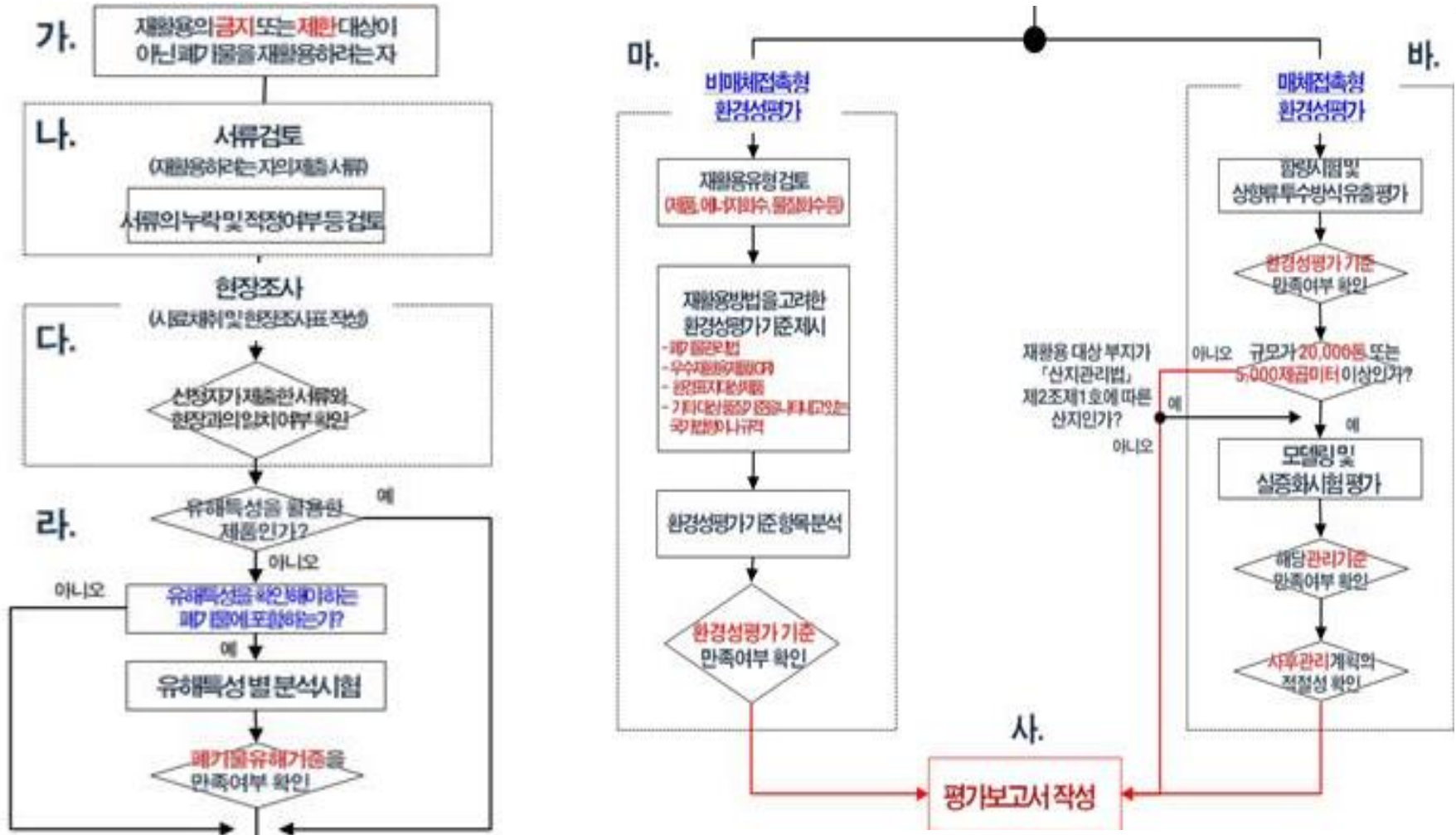
(1) 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이 별표 1에 따른 유해물질의 기준 미만인 폐기물만 재활용해야 한다.

(2) 건설용 골재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3)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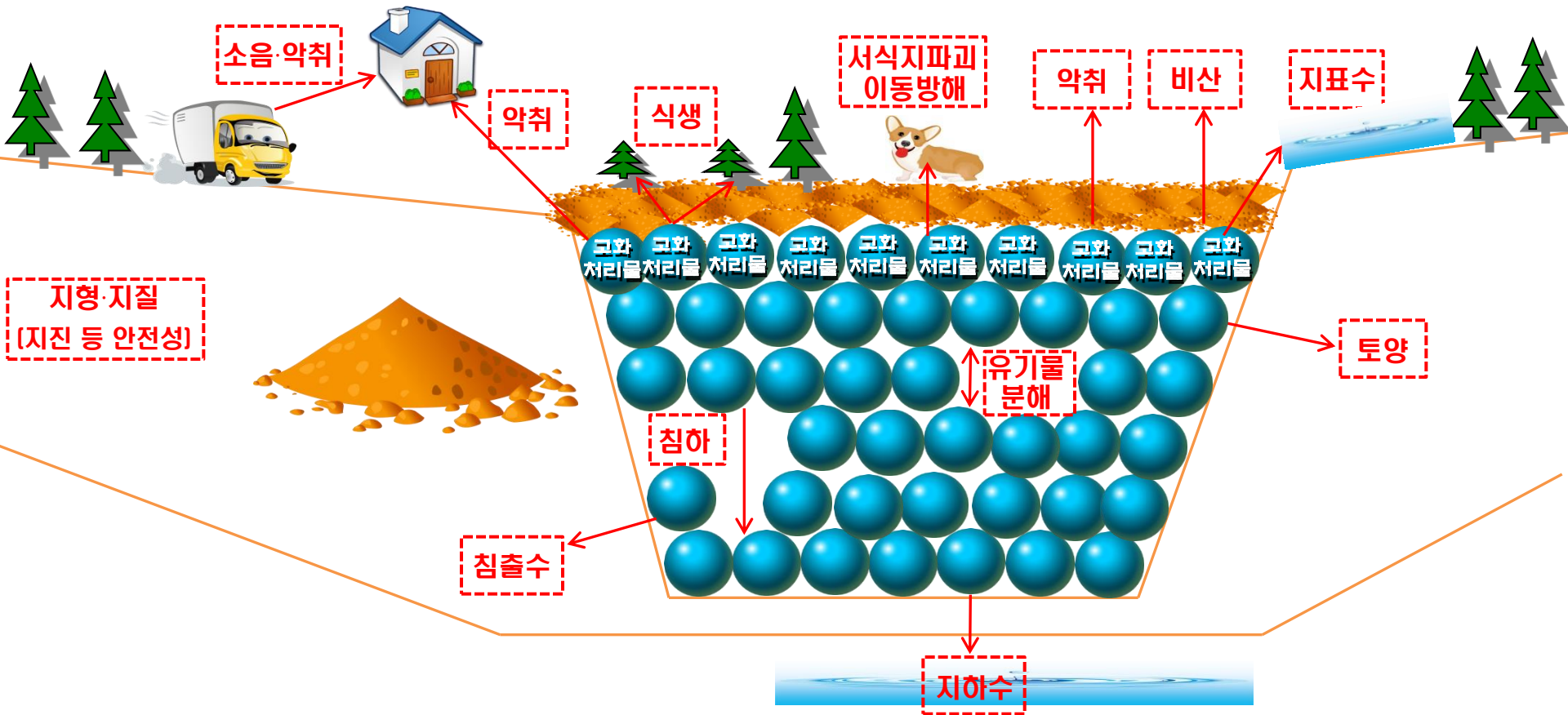
재활용환경성평가

재활용환경성평가 절차 및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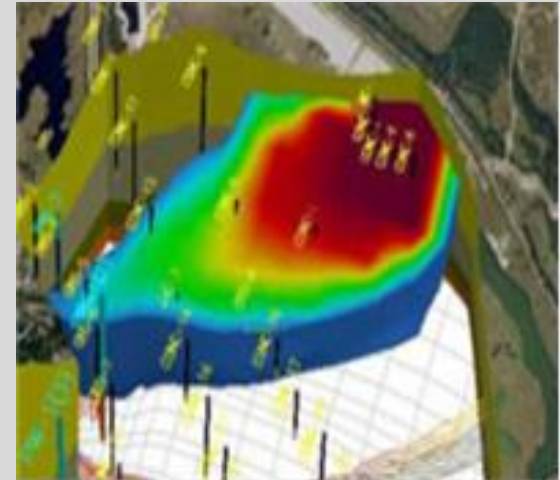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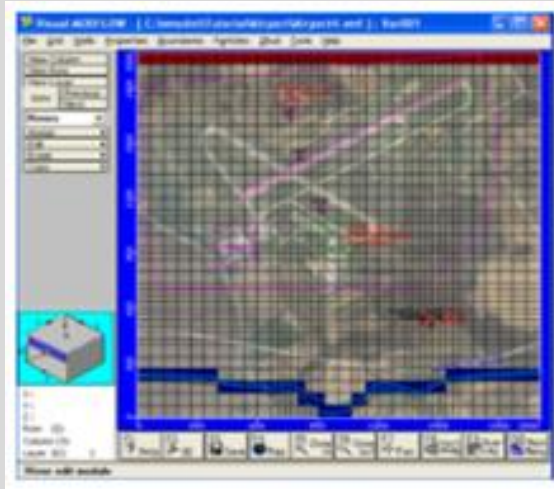
재활용환경성평가

재활용환경성평가(매체 접촉형)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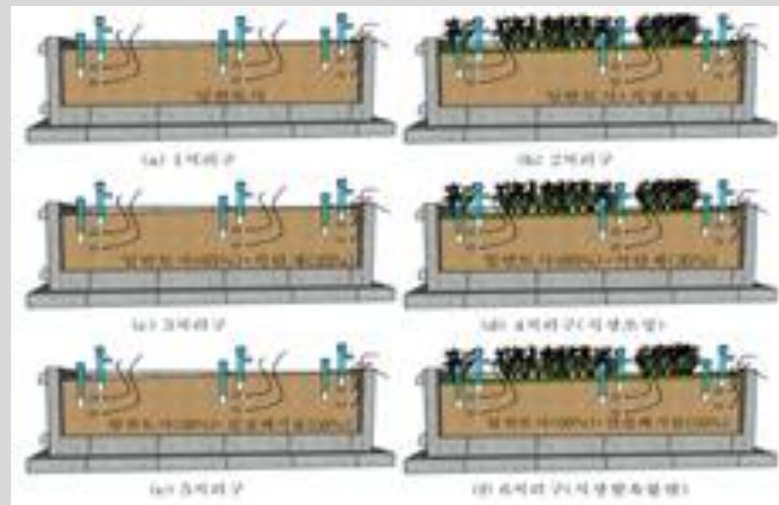


매체접촉형 모델링 및 현장적용성 평가

모델링
평가



현장
적용성
시험



평가 수수료

(단위 : 천원)

구 분	평가수수료 (부가세포함)	기본 수수료	가산 비용 (출장비)	분석 수수료	모델링평가 및 현장적용성 시험
매체	26,139 (+가산비용+분석비용+ α)	23,763	공단 출장여비 기준	수수료고시 및 분석 실비	실비 (+ α)
비매체	3,960 (+가산비용+분석비용)	3,600			-

※ 재활용환경성평가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6-21호 「재활용환경성평가 수수료 고시」에 의해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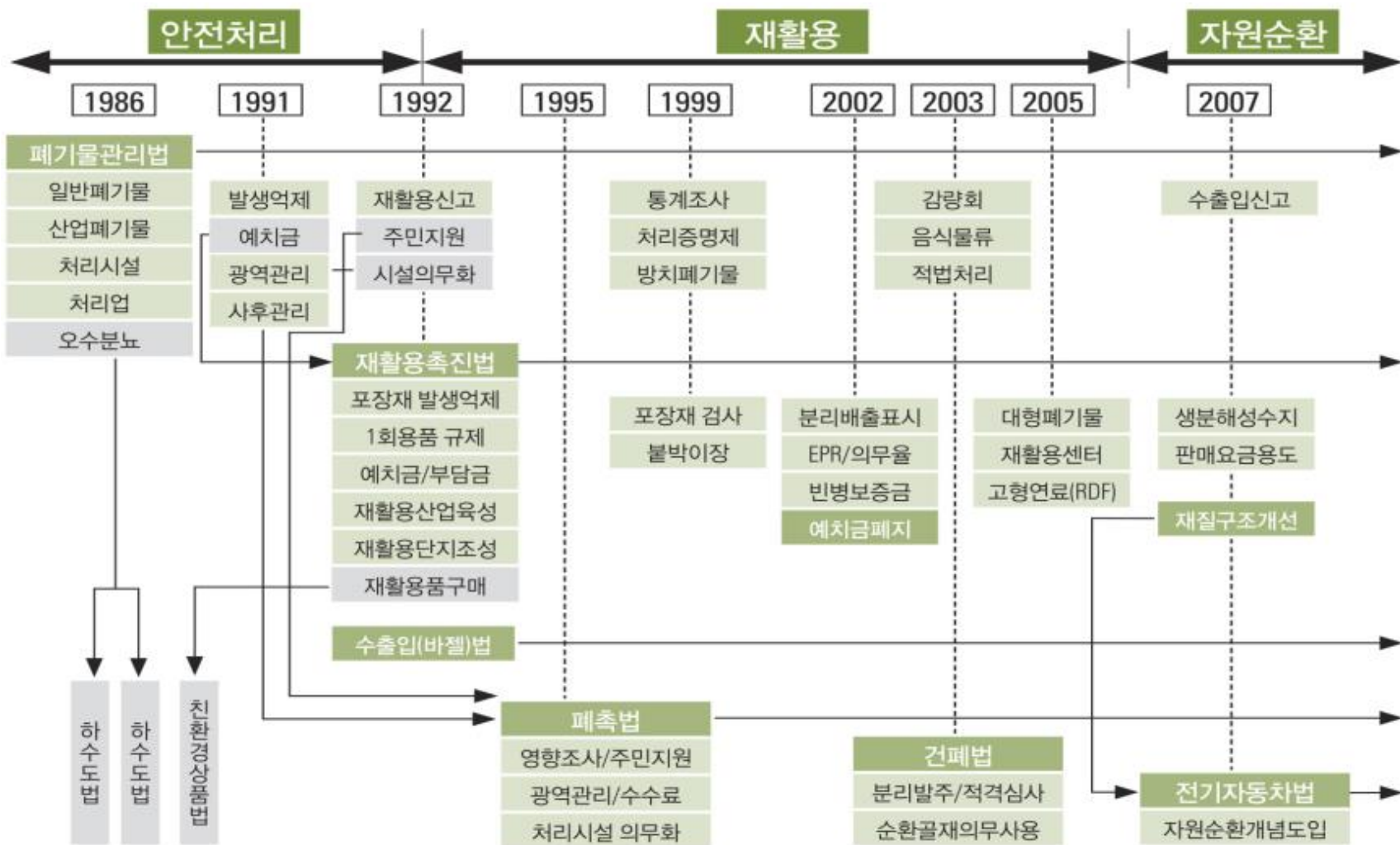


자원순환기본법

제도 소개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순환정책 변화



추진 배경

국제 상황

- 전세계적 자원 위기
 - * GDP 1% 증가할 때 자원사용 0.4%상승
 - * 성장에 필요한 자원확보 경쟁
- 선진국은 매립 제로화, 재활용극대화 추진
 - * 폐기물 직매립 금지, 매립소각 부담금 부과

국내 상황

- 자원 해외 의존도 높음
 - * 에너지 97%, 광물자원 90%
 - * 하루 1조원(연 371조원) 수입
- 폐자원을 매립,소각
 - * 매립·소각되는 폐기물의 56% 자원회수 가능
- 매립지 추가건설 비합리적
 - * 기존 매립지 고갈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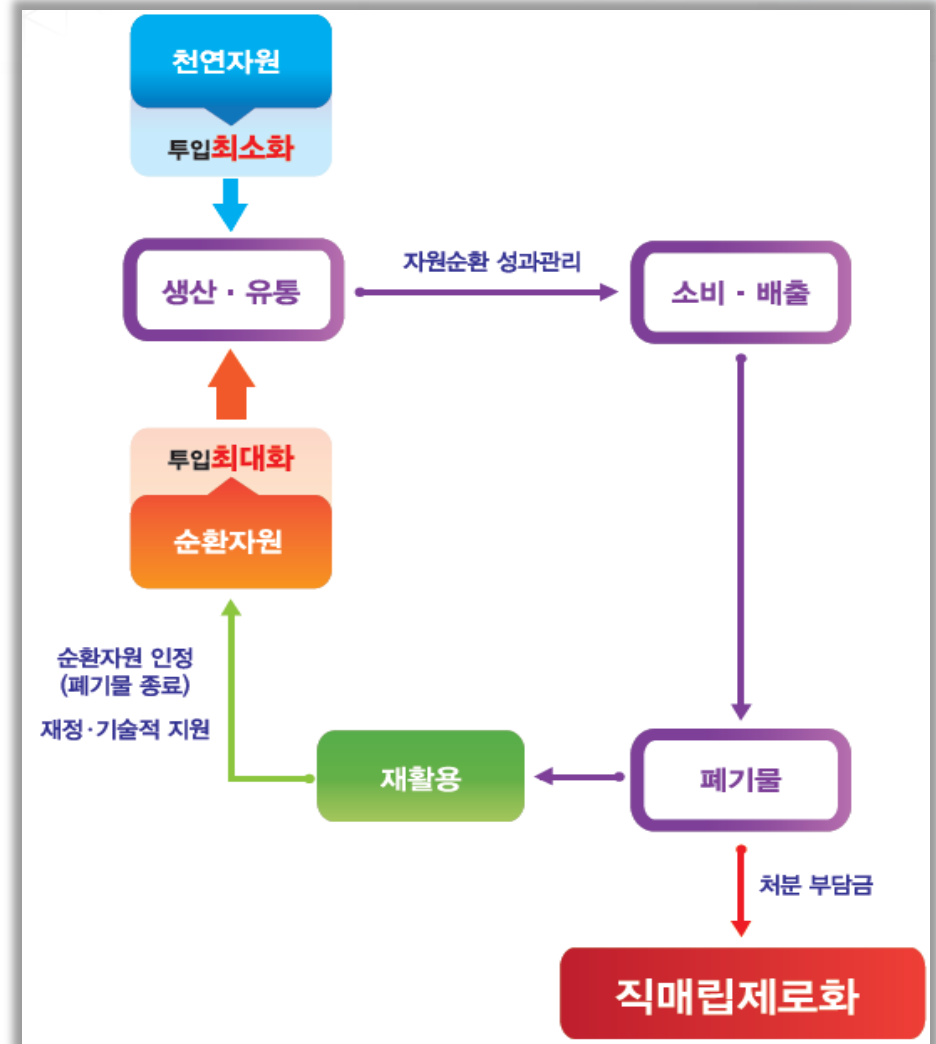
대량생산·소비·폐기의 사회경제구조의 문제
지속가능한 성장의 한계로 작용

자원순환기본법

추진 배경

- ✓ 생산·유통·소비·폐기 전 과정
 - 자원의 효율적 이용
 - 순환이용 촉진
- ✓ 순환자원 투입을 최대화하여, 천연자원 투입을 최소화
- ✓ 매립소각 억제를 통하여 재활용 유도
- ✓ 순환자원 인정 제도, 정책적 지원 등으로 순환자원 사용 촉진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법제화 추진



주요 내용

자원순환 기반 구축

- 자원순환 기본원칙,
주제별 책무 명시

* 국가, 지자체, 사업자, 국민 등

- 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

* 자원순환 추진목표 설정,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 발생억제,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 등

- 자원순환 문화조성,
자원순환 국제협력

자원순환 촉진 수단

- 자원순환성과관리제 도입

* 매년 자원순환목표 설정·실적검증,
순환자원 수요 확대

- 폐기물처분(소각·매립)부담금

* 재활용비용보다 소각·매립비용을
더 비싸게 가격구조 역전

-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다고 의심되거나,
순환이용성이 떨어지는 제품 등에 대해
평가, 개선 권고

자원순환 업계 지원

- 순환자원 인정제 도입

* 환경성·경제성 등 충족시
폐기물 제외
(폐기물 규제에서 배제)

- 재정적·기술적 지원

* 자원순환산업 육성, 영세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지원 등

- 순환자원 정보센터,
순환자원 품질표지 등
업계 지원 시책 마련

재활용 극대화, 매립 제로화 실현기반

자원순환기본법

구성 체계

분야	위임사항
총칙	1. 용어 정의(제2조)
	2. 자원순환사회 발전 문화 조성(제8조)
	3. 순환자원 인정(제9조·제10조)
기본계획 등	4. 자원순환 기본계획(제11조·제12조)
	5. 자원순환 통계조사(제13조)
촉진시책	6. 자원순환성과관리(제15조·제16조)
	7. 순환자원 사용촉진(제17조)
	8. 사업자단체 설립(제18조)

분야	위임사항
촉진시책	9.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제19조)
	10. 순환자원 품질표지(제20조)
기반조성	11. 폐기물처분부담금(제21조·제22조)
	12. 지자체 자원순환특별회계(제23조)
	13. 순환자원정보센터(제24조)
	14. 자원순환정보체계(제25조)
	15. 재정적·기술적 지원(제26조)
보칙·벌칙	16. 보고 및 검사(제29조)
	17. 위임 및 위탁(제31조)
	18. 과태료(제36조)

순환자원 인정제도

폐기물

순환자원 기준 모두 충족 시

순환자원
=
폐기물 X

순환자원의 기준

1.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을 것
2.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을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순환자원 기준을 충족할 것

배출

운반

보관

처리

사용

규제 O

배출

운반

보관

처리

사용

규제 X

인정 세부기준

1) 유해성 관련 평가 사항

- 유해성(지정폐기물, 재활용 금지대상 해당 여부 등) 및 유해물질 함유 수준
- 수집·운반·보관 등 과정에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 ※ 비산먼지·악취 등의 발생, 침출수 유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배출 우려 여부

2) 경제성 관련 평가 사항

- 재활용을 통해 천연자원 사용을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유상으로 거래되고 있는지 여부
- 해당 사업장의 생산량보다 시장 수요가 많고, 충분한 수요자 존재

3) 그 밖의 순환자원 기준

<순환자원 대상 물질 관련>

- 국내에서 발생한 고체 상태의 폐기물
- 다른 폐기물 또는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않은 단일 물질
 - ※ 다만, 별도의 이물질 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충족(환경부장관 고시)
- 유기성폐기물은 사료·비료, 목재 제품 등의 원료나 재료, 농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 등으로 한정

인정 세부기준

<순환자원 대상 물질 관련>

- 소각·매립·장기보관 또는 에너지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외
- 성토재·복토재·기층재 등 매체접촉형 용도 제외
- 부패의 우려가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오니류, 동물성잔재물 제외
- 그 외 폐기물 특성 등을 고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외

<순환이용 공정 관련>

- 분리·선별·파쇄 등을 거쳐 제품 제조 공정에 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것
 - ※ 다만, 발생단계에서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않고 바로 다른 제조 공정에 투입되는 경우 순환이용 과정 생략 가능
- 순환자원 기준 준수, 품질 유지 등을 위한 생산·관리 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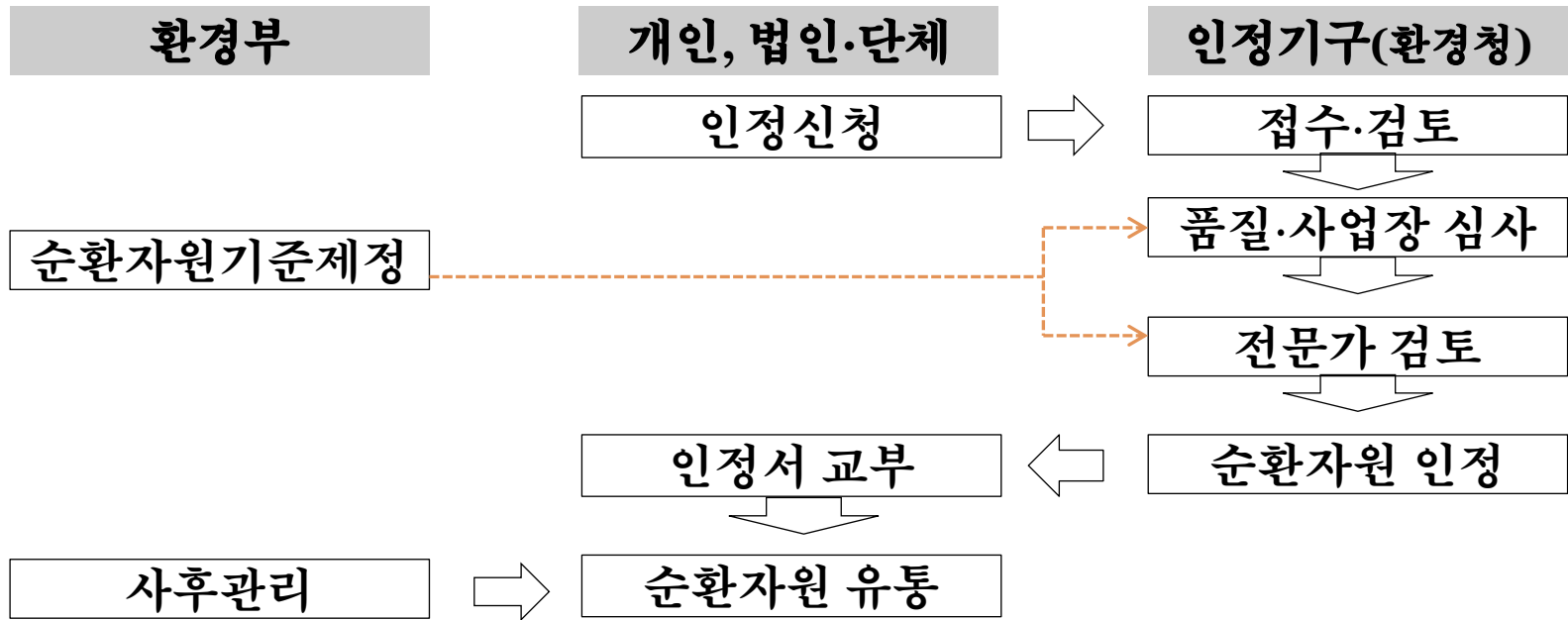
<순환자원 사용 관련>

- 제품 제조에 사용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여야 함
 - ※ 다만, 제조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부 품목을 수집·운반하는 행위는 허용
-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

※ [공통사항]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용도·방법·기준에 적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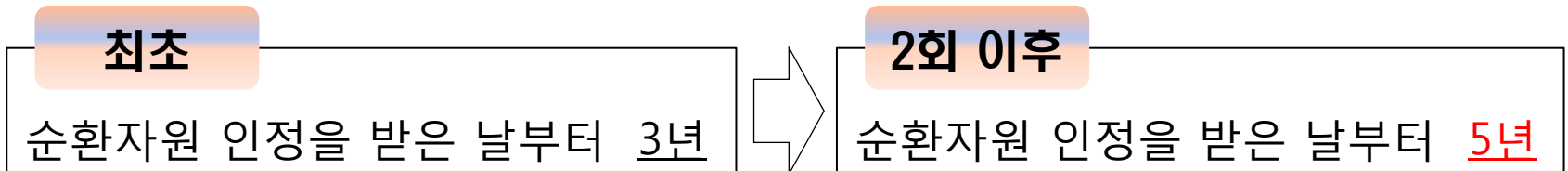
자원순환기본법

인정 절차



※ (처리기간) 신청서 접수 이후 60일 이내(30일 연장 가능)

유효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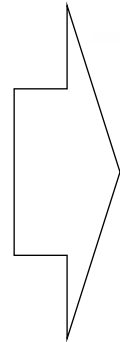


절차 완화

폐지

폐금속 등

환경영향이 적은 물질



구비서류 간소화,
품질심사, 사업장(공장)
심사 등 절차 일부 생략

인정 취소

취소요건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경우
2.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물질이 순환자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인정
취소

폐기물로 처리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라
- 폐기물배출자의 신고 또는 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등
- 폐기물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 조치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조치 결과 보고(환경부장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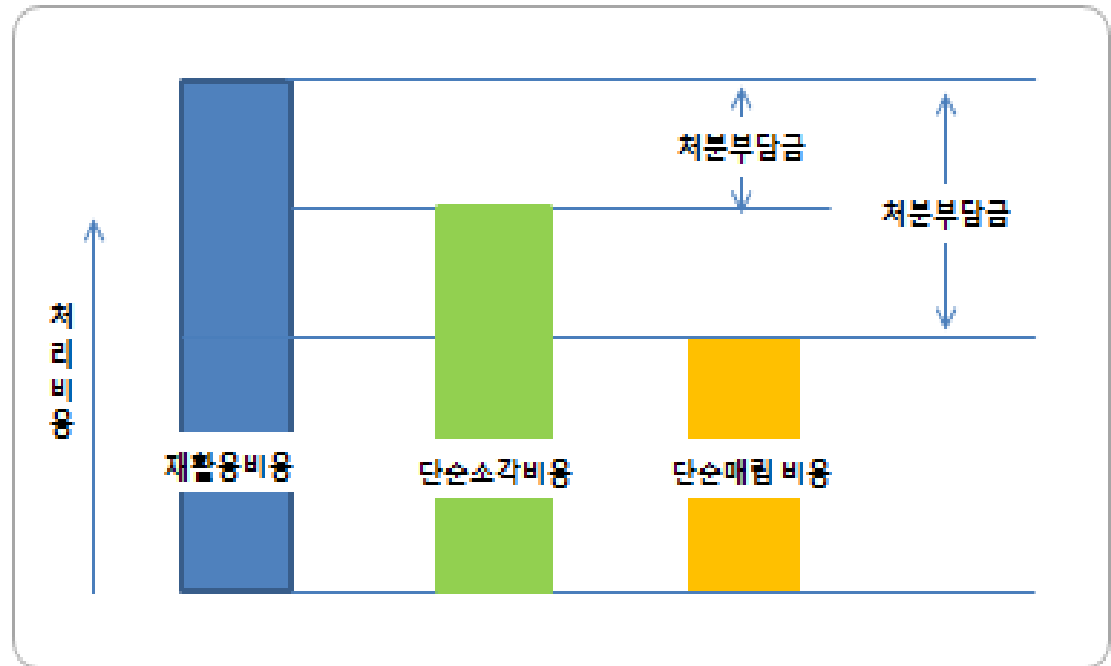
폐기물처분부담금

-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 단순 소각, 매립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선택하도록 경제적으로 유인

(현재)
소각·매립비용
◀ 재활용비용



(개선)
소각·매립비용
≥ 재활용비용



부과대상자(납부의무자)

- 생활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장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부과대상 폐기물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로서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 재활용금지(제한) 대상 폐기물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

부담금 산출

폐기물처분부담금 = 처분량 × 부과요율 × 산정지수

- * 소각·매립 처분되는 폐기물 중량단위(무게)를 기준으로 부과표준 설정
 - * * 소각처분시설 또는 매립처분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중량
 - * * 중량계측이 곤란할 경우에는 환산계수를 이용하여 중량환산

* 부과요율 : 소각,매립 폐기물을 순환이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 산정

산정지수 = 전년도산정지수 × 전년도 가격변동지수

- * 최초 적용연도를 1로 정하고 그 다음연도부터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고시
 - * * 가격변동지수 : (생산자 물가상승률 + 소비자 물가상승률) / 2
 - * * 물가상승률 : (금년도 물가지수 - 전년도 물가지수) / 전년도 물가지수

부담금 감면

(1)	폐기물매립지를 직접 조성하고 향후 재활용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매립하는 경우 - 자가매립시설에서 매립한 후 3년 이내에 재활용 : 50% 감면
(2)	폐기물처분과정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2에 따른 폐자원에너지회수율 일정기준 이상 회수하는 경우 - 소각열에너지를 75% 이상 회수 : 50% 감면 - 소각열에너지를 50~75% 미만 회수 : 30% 감면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된 경우 : 100% 감면
(4)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 매출액 10억 미만 : 100% 감면 - 10억~50억 미만 : 50% 감면
(5)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① 및 ③) 이 수립한 복구계획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 100%

자원순환 성과관리

-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도 및 사업자의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제도

시도의 경우

- (대상범위) 시·도에서 관리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전체
- (목표설정) 국가목표를 기준으로 5년 단위 시나리오 방식으로, 지자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체 설정

사업자의 경우

- (적용대상)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감량화 의무대상 사업장
 - ※ 18개 업종, 최근 3년간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을 100톤 이상 또는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을 1,000톤 이상 배출한 자
 - ※ 향후, 폐기물관리법 조항은 삭제

사업자 자원순환 성과관리

- (목표설정) 최근 3년간 실적을 기반으로 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설정
 ※ 개별 사업장별 목표 설정 이전 산업부 및 업종별 사업자단체와 사전 협의
- (미이행시) 목표 미달성 사업장은 미달부분을 다음 연도에 이행토록 하고, 이행 명령 미이행 시 사업자 명단·실적 공개 및 기술진단·지도 등 조치

세부 이행절차



감사합니다

